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6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영호ㆍ이병진ㆍ정성호

김동아 · 고민정 · 강득구

전재수 · 송재봉 · 이상식

박희승 · 모경종 · 박용갑

조계원 • 윤준병 • 김준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·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.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,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7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7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방법,"을 "방 법 및"으로, "그 밖에"를 "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시 기,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"로 한다.

- 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④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	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		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대학의		
	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
<u> <신 설></u>	④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		
	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수수료		
	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		
	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장관		
	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		
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	<u> </u>		
험의 시기, <u>방법,</u> 부정행위에	<u>방법 및</u>		
대한 조치, <u>그 밖에</u> 필요한 사	<u>제</u> 3항에 따른 <u>실</u>	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시기,		
	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및		
	시기 등에		